

#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중 일부변경

특허청고시 94-6호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중 “다”호의 수수료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1994. 9. 26.

특 허 청 장

- |  |          |
|--|----------|
| 1. 기본료   | 505,000원 |
| (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)  | 10,000원  |
| 2. 지정료   |          |
| 가. 특허협력조약 규칙 4.9(a)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의 지정료 1지정국(AP, EP, OA의 지정도 각각 1지정국으로 봄)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3,000원 |
| 단, 지정국이 1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함.   |          |
| 나. 특허협력조약 규칙 4.9(b)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, 특허협력조약 규칙 4.9(c)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지정국의 지정료 1지정국(AP, EP, OA의 지정도 각각 1지정국으로 봄)당 | 123,000원 |
| 3. 조사료   |          |
| 다.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  | 516,000원 |

## 부 칙

- (시행일) 이 고시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일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여 동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.